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시행 2025.9.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규정, 2025.9.4, 일부개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53-230-11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8.>

제2조(적용범위) ① 계약 및 공모의 절차에 따라 추진 되는 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원 내 규정, 규칙, 지침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 12. 28.>

② 삭제 <2020. 12. 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8.>

1. "사업관리"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기획, 심의, 계약 및 협약 내용의 이행, 사업금액의 검토 및 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12. 28.>
2. 삭제 <2020. 12. 28.>
3. "수행기관"이란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기 위해 입찰 또는 공모 등에 의거 선정한 기업, 기관,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 12. 28.>
4. "사업담당부서"란 사업관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한국지능정보원의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0. 12. 28., 2025. 9. 4.>
- 4의1. "사업책임자"란 개별 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담당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사업책임자는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이 없는 경우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정한다.<신설 2020. 12. 28.>
5. "사업담당자"란 개별 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개정 2020. 12. 28.>
6. "사업관리지원부서"란 사업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계약, 평가, 조달의뢰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지능정보원의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0. 12. 28., 2025. 9. 4.>
7. 삭제 <2020. 12. 28.>
8. 삭제 <2020. 12. 28.>

제2장 추진체계 관리 및 제안요청

제4조(추진체계 관리) ①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관리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1. 개별 사업의 근거 법령 및 관련지침 목록
2. 해당사업의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분담
3.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평가단의 구성여부 등

② 사업관리지원부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체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점검한다.<신설 2017. 8. 7.>

제5조(추진체계 관리) 삭제 <2017. 8. 7.>

제6조(사업심의위원회) ① 사업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제 예산규모 1억원 초과 (타 법령 및 규정·규칙·지침 등에서 적용 예산규모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0. 12. 28., 2021. 1.

19.>

1. 사업담당부서의 사업추진체계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28.>
 2. 사업의 중복성 및 예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28.>
 3.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28.>
 4. 기타 사업담당부서 또는 사업관리지원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 12. 28.>
- ② 사업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전문직 위원 중 호선한다.<신설 2020. 12. 28>
1. 당연직 위원: 주무부처 사업담당자, 사업 담당부서 관리자
 2. 전문직 위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 ③ 사업심의위원회는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신설 2020. 12. 28.>
- ④ 위원 위촉절차, 자격요건, 임기 등 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8.>
- ⑤ 사업심의위원은 심의대상사업 관련 임직원 또는 심의대상사업과 관련된 자가 자기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사업담당부서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0. 22.>
- ⑥ 사업심의위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24. 10. 22.>
- ⑦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심의위원이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2.>

제6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각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사업담당부서에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 ② 사업관리지원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각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등을 따른다.
- ⑤ 타 법령 또는 원내 다른 규정·규칙·지침 등에서 해당 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⑥ 과업심의위원은 심의대상사업 관련 임직원 또는 심의대상사업과 관련된 자가 자기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사업담당부서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0. 22.>
- ⑦ 과업심의위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24. 10. 22.>

⑧ 사업담당부서는 과업심의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본조신설 2021. 1. 19.]

제7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사업담당부서는 제안요청서를 작성 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8. 4. 2., 2020. 12. 28.>](#)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업담당부서는 제안요청서의 적정 과제비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 등을 활용하거나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20. 12. 28.>](#)

③ 삭제 [<2017. 8. 7.>](#)

④ 삭제 [<2017. 8. 7.>](#)

제8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과제담당자는 확정된 제안요청서를 한국지능정보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양조달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사전공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8., 2025. 9. 4.>](#)

제9조(제안요청서 변경) 사업담당부서는 확정된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청사항 등 중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 후 제6조의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안요청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3장 참여기관 선정

제10조(선정절차의 분리) 삭제 [<2020. 12. 28.>](#)

제11조(참여기관 선정) 삭제 [<2020. 12. 28.>](#)

제12조(제안요청 설명회의 개최) 사업담당자는 제안요청 공고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8.>](#)

제13조(공모에 의한 참여기관 선정) 삭제 [<2020. 12. 28.>](#)

제14조(과제조정위원회) 삭제 [<2020. 12. 28.>](#)

제15조(단일 참여기관 제안에 따른 적격평가) 삭제 [<2020. 12. 28.>](#)

제4장 사업수행관리

[제목개정 2020. 12. 28.]

제16조(감독 및 검사담당자의 지정) 삭제 [<2020. 12. 28.>](#)

제17조(하도급) ①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수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12. 28.>

② 사업담당부서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하도급의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등을 우선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18조(재하도급 제한) 사업책임자는 참여기관이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또는 재위탁수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8.>

제19조(과제착수) ① 사업담당자는 계약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협상서,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이되므로 착수계의 과업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8.>

② 사업담당자는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계약문서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8.>

제20조(진도관리) 사업담당자는 수행기관과 주·월간업무현황보고 등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8.>

1.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2. 추진일정 지연시의 사유 및 제반 문제점 파악
3. 기타 진도관리가 필요한 사항 수행

제21조(변경관리) ① 사업담당자는 사업의 목적상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8.>

1. 사업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28.>
2. 참여인력, 장비, 하도급(위탁수행) 사항<개정 2020. 12. 28.>
3. 산출물 목록 등 기타 변경관리가 필요한 사항 수행<개정 2020. 12. 28.>

② 사업의 변경에 관련된 지시, 요청, 승인, 통보, 회신 등은 모두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③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변경사항은 사업책임자 승인을 얻어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8.>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매계약업무규칙에 따라 사업관리지원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22조(실태점검)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포함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8.>

② 삭제<2017. 8. 7.>

③ 사업담당부서는 실태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1. 점검 대상 범위<개정 2020. 12. 28.>
2. 실태점검 수행 기간 및 시기
3. 실태점검 내용 및 방법
4. 점검반 구성 및 운영방법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수행에 불법 및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8.>

제23조(외부점검) ① 사업책임자는 일반적인 실태점검 이외에 사업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담당부서, 수행기관 등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제3자를 선정하여 감리 등 외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8.>

② 사업담당자는 외부점검 실시 이후 수행기관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8.>

제24조(산출물관리) ① 사업담당자는 제19조에 의해 정의된 산출물이 제대로 완성되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8.>

② 삭제 <2020. 12. 28.>

③ 사업책임자는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에 대해 발생한 산출물의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8.>

제25조(검사) 삭제 <2020. 12. 28.>

제5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목개정 2020. 12. 28.]

제26조(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① 삭제 <2020. 12. 28.>

② 사업담당부서는 수행기관이 체결한 하도급 또는 위탁수행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 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8.>

③ 사업담당자는 하도급 또는 위탁수행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 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의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제27조(중도금 등의 지급) 삭제 <2020. 12. 28.>

제28조(과제비 정산) 삭제 <2020. 12. 28.>

제29조(과제비정산조정위원회) 삭제 <2020. 12. 28.>

제6장 공통 운영 및 관리사항

제30조(정보공개) 계약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8., 2025. 9. 4.>

제31조(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협약) ①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수행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관한 비밀유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8.>

② 사업담당부서는 해당 사업 관련 규정에 해당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따라 추진체계 관리 시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③ 비밀유지협약은 사업추진에 관한 비밀유지를 위해 사업담당부서와 계약자 간에 체결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제공된 기술의 범위, 비밀유지 기간, 위반 시 배상 등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제31조의2(기술자료 임치) ① 수행기관은 산출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부서는 수행기관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4. 12. 30.>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② 임치기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에서 수행기관이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수행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24. 12. 30.>

제32조(교육관리) 사업책임자는 사업관리의 역량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담당부서 및 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20. 12. 28.>

제33조(전문가 풀 운영) 삭제 <2020. 12. 28.>

제34조(운영지침) 삭제 <2020. 12. 28.>

부칙 <제호,2024.12.3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